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4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 나. [별표 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 향후('24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 협의완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2133-396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를 ““중장년층”이란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3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을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

함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의2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시가”를 “서울특별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년층(長年層)</u>"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u>중장년층</u>----- ----- ---.</p> <p>제2조(정의) ----- ----- ---.</p> <p>1. "<u>중장년층</u>"이란 40세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중장년층</u>----- ----- -----.</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중장년층</u>----- ----- -----.</p>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중

제4조(지원사업) ① ----- 중장년층-----

1. ~ 6. (현행과 같음)

② -----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

제5조(재정지원 등) ① ----- 범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

1. ----- 중장년층-----

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 4. (생략)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7. (생략)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

--

2. ----- 중장년층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장년층 -----
----- 서울특별시 -----

6. 중장년층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설명	명칭	소재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범위-----
----- 지원할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1. 중장년층 -----

2. 중장년층 -----

3.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설명	명칭	소재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기존 법규 및 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허준오 (02-2133-3963)